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21	직원	주택문제 해결	주택구입시 취.등록세 감면	규정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○ 이전기관 소속직원이 신규주택 구입시 취·등록세 감면		혁신도시특별법 제48조 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	06.3.14~ 07.1.11	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가능	
소관부처	행정자치부		08.1.1	○ 시도별 조례 개정 - '08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반영되어 시도별로 조례개정 완료	
담당부서	지방세정책과		11.12.31	○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- 감면기한 '12.12.31까지 면제,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3년 연장	
			13.1.1	□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제81조 제3항) -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('12년 → '15.12.31) - 정당한 사유(인사발령 등)로 인한 추정 면제기간(3년) 신규 반영	

2016.12.31	□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제81조 제3항) -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('16년 → '19.12.31)	
------------	--	--